

용인시의회 제260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용 인 시 의 회 의 장

2022년 1월 6일

용인시의회 규칙 제41호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71조”를 “「지방자치법」 제83조”로 한다.

제3조의2 중 “1월 10일까지 대강”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로 한다.

제7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정부에서 통지된 영장 사본을 청가서로 본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원의 청가는 의장이 허가한다.

③ 의장은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되, 출산 후의 휴가기간이 4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게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남성의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휴가는 남성의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를 원격영상회의(의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제32조와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발언과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격으로 출석하여 표결한 때에는 회의장에 출석하여 표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의된 본회의에서의 표결은 제44조에 규정된 표결방법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다.

④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장’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간사’로 각각 본다.

제14조제2항 중 “제63조제1항”을 “제72조제1항”으로 한다.

제19조의2제1항 중 “법 제66조의2 제1항”을 “법 제77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

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
2. 의장·부의장 불신임의 건
3.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사임의 건
4. 회기 중에 제출한 의원 사직의 건
5.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8. 시장 등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
9. 재의의 건
10.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11.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12. 회기 결정의 건
13.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
14. 의원이 동의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
15. 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
16. 본회의 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
17. 위원회의 제안의안(제23조에 따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제23조의 제목 “(위원회의 제출의안)”을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의 처리)”로 한

다.

제23조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23조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의장”을 “특별히 심사가 필요한 경우 의장”으로 한다.

제3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제1항 단서 중 “있다”를 “있으며, 법 제74조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3항) 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5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일반”을 “주민”으로 한다.

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5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의2(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 집행기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자를 결정한다.

제56조의3, 제56조의4 및 제58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 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8조의2(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9조제2항 중 “가진다”를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1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1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방식과 질문요지를 기재한 질문요

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휴무토요일, 공휴일 제외)까지 질문요지서가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제75조제1항 중 “법 제79조”를 “법 제91조”로 한다.

제87조제1항 중 “법 제86조”를 “법 제9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83조”를 “법 제95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8조제1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92조 중 “법 제71조”를 “법 제83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소 속	입 안 자
의회운영위원회	김운봉 의원
	이미진 의원
	김희영 의원
	윤재영 의원
	전자영 의원
	하연자 의원
	황재욱 의원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

□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제17893호, 2021.1.12. 공포, 2022.1.13. 시행)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관계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 및 기록표결 원칙 등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 및 의정활동 책임성을 강화하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안 제14조, 안 제19조의2, 안 제75조, 안 제87조, 안 제92조)
-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조)
- 원격영상회의 규정 신설(안 제13조의2)
- 상임위원회 회부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0조)
- 5분 자유발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34조의2)
- 표결방법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4조)
- 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1조)
- 집행기관의 위원회 위원추천 처리기준 정비(안 제56조의2)
- 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에 규정 신설(안 제56조의3)
-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6조의4)
- 의장의 위원회 출석과 발언 규정 신설(안 제58조의2)
- 시정질문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71조의2)